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1. 8. 31.(수)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의결 가 ~ 의결 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제1항제1호에 의거, 제2009-30차 전원회의(2009.7.9), 제2010-1차 전원회의(2010.1.14), 제2011-17차 전원회의(2011.3.21)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 의결 라 ~ 의결 사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제1항제2호에 의거,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됨
- 보고 가 ~ 보고 나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1(서면보고)제1항에 의거,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건’에 해당됨

2] 의결사항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큐큐톡 등 2개사 - (2011-48(서)-160)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주)큐큐톡, (주)데일리안티비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주)큐큐톡, (주)데일리안티비의 등록내용 >

신청법인	채널명	방송분야 (방송유형)	대표자	최다액출자자 (지분율)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주)큐큐톡	채널큐피드 (channelQupid)	결혼 (텔레비전)	백인호	백인호 외 2명 (100%)	5억원 (5억원)
(주)데일리안티비	데일리안TV (dailian tv)	교육 (텔레비전)	민병호	민병호 외 1명 (100%)	5억원 (5억원)

나.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48(서)-161)

- 방송법 개정('11.7.14)으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명칭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되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시청자 불만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①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및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명칭 변경

- 현행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함께 의견수렴과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업무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시청자의 불만처리 기능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
- 또한, 현행 규칙명은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방송법 개정취지에 맞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② 심의대상 확대

- '08. 12월 IPTV 방송 실시에 따라 시청자 민원이 발생함에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가 불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IPTV 방송을 심의대상에 포함

다.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48(서)-162)

- 제44차 위원회('11.7.22) 보고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과정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마련된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현황) 현행 지역방송대표단체 고시는 3개 부문(사업자단체, 학술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법정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를 1개씩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단체의 해산·소멸 등으로 단체가 없어지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음
 - (개정내용) 통상의 입법례에 맞추어 지역방송대표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단체명은 지정하지 않도록 함

라.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부산영어방송재단 - (2011-48(서)-163)

-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재)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해 원안대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위반내용 :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된 때로부터 324일이 경과한 시점에 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
 - 처분내용 : 최초의 위반 행위이고 신생방송국('09. 2. 27. 방송국 개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250만원 부과

마.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48(서)-164)

- 케이블TV사업자의 경영효율성 및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다채널 변조기에 대한 기술적 특성 반영, 보급형셋톱박스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다채널 변조기 도입
 - 케이블TV가입자들이 노후화된 단일채널변조기('95년 구입)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으나, 동 시스템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최근 생산되고 있는 다채널 변조기를 구입해야 할 상황임
 - ※ 채널변조기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신호로 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 그러나, 現기술기준은 단일채널 변조기만을 기준으로 기술적 특성을 규정 하고 있어 다채널 변조기의 기술적 특성(영상, 음성신호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

② 보급형 셋톱박스 관련 규제완화

- '09. 10, 디지털전환활성화기본계획에 따라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촉진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수신전용의 보급형(단방향) 셋톱박스를 도입함
- 한편, 기술발전에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CAS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수신제한모듈) 내장형 셋톱박스가 개발됨
- 그런데 현행 기술기준에 의하면 셋톱박스는 CAS를 분리 또는 교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CAS 내장형 셋톱박스를 보급형 셋톱박스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보급형 셋톱박스에 한해 CAS내장을 허용토록 하여 셋톱박스 비용을 절감하고 (12만원→8만원) 저렴한 디지털상품 보급도모

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 (2011-48(서)-165)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에 의거, 원안대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
- 주요 내용

<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총 7인) >

분 야	성 명	성 별	현 직
위원장	김충식	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회계	홍형기	선진회계법인 이사
	시청자 단체	이경화	학부모 정보감시단 대표
	행정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법률	이희정	고려대 법학과 교수
	방송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임기 1년, 연임 가능

사.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등 3사의 (주)영서방송 주식소유 - (2011-48(서)-166)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의거, (주)씨씨에스충북 방송, (주)월드이벤트티브이, (주)에스비인터랙티브의 (주)영서방송 주식소유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주식취득법인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월드이벤트티브이, (주)에스비인터랙티브 >

구 분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유인무)	(주)월드이벤트티브이 (대표:김진성)	(주)에스비인터랙티브 (대표:유인무)
주요 사업	종합유선방송(13만명) 초고속인터넷(1만명)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	콘텐츠 개발 및 판매 스마트폰 앱 수다폰(m-VoIP) (40.5만명)
사업 권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	-
주요 주주 (5%이상)	유인무 (27.62%) 유홍무 (25.89%) (주)능암 (15.75%) (주)미래상호저축은행 (5.17%)	(주)씨씨에스충북방송 (74.3%)	(주)씨씨에스충북방송 (65.5%)
경영 현황 (’10년)	·매 출 액: 186 억원 (통신 17 억원) ·자 본 금: 235 억원 ·영업이익: 0.7 억원	·매 출 액: 35 억원 ·자 본 금: 77 억원 ·영업이익: 7 억원	·매 출 액: 79 억원 ·자 본 금: 35 억원 ·영업이익: 1 억원

< 피주식취득법인 : (주)영서방송(대표자: 유인무) >

주요사업	사업권역	주주 현황 (변동 내역)	경영현황(’10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 (15.9만명) 초고속인터넷 (2.8만명)	원주,횡성 평창,영월 정선	·(주)횡성유선방송 (31.6%) ·김희진 등 2인 (44.3% → 33.6%) ·박성섭 등 3인 (24.1% → 5.6%) ·(주)씨씨에스충북방송 (0% → 14.3%) ·(주)월드이벤트티브이 (0% → 7.8%) ·(주)에스비인터랙티브 (0% → 7.1%)	57억원	233 억원 (통신 64 억원)	-3 억원

③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3)으로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이 폐지되고, 국제회계기준의 회계용어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음
- 주요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구분 폐지 (제5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3)으로,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 관한규정」(대통령령)도 이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폐지함
 - ② ‘대차대조표’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 (제16조)

- '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상의 회계용어를 반영하여 '대차 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

※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자본시장 세계화에 대응하여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에 대해 '11년부터 적용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

③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폐지 (제18조)

- 무선호출서비스사업자의 지역별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역무의 지역별 회계 분리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 서울이동통신을 제외한 모든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사업을 폐지하여, 동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정을 폐지

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서비스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빈발하고, 사업자간 용어가 다르고 어렵다는 등의 소비자단체 의견 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구성 및 체계 정립) 필수고지사항을 '이용요금' 정보와 '이용량' 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명확화

② (예상 해지비용 기재) 서비스별 예상 해지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사업자 전환을 용이하게 함

※ 초고속인터넷 해지비용 유형 : 경품위약금, 설치비 반환금 등

③ (기재방법 표준화) 오해의 소지 없는 평이한 용어사용, 이용약관 유사 표현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 제시, '표준고지서' 권고를 통해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 '사용료 반환금' →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으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기

④ (결합·합산고지서 규제) 결합 및 합산 고지서도 동 고시의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결합상품할인과 개별상품할인 구분 표기

⑤ (장애인용 고지서 제공) 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 근거 규정 마련

⑥ (약정기간 표기) 약정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 의무화